

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성명	
여행목적	[] 친족의 사망/질병/부상 등 인도적 사유 [] 출장 [] 여행 [] 기타
발급사유	[] 여권 유효기간 만료 [] 여권 유효기간 부족 [] 여권 분실·도난 [] 여권 미소지 [] 여권 훼손 [] 여권 신규발급 [] 행정 착오로 인한 여권 재발급 [] 기타
여행 국가 또는 지역	
여행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긴급한 사유 (상세기술)	

「여권법 시행령」 제14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여권 신청 사유를 제출하며,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※ 「여권법」 제24조(벌칙): 이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,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년 월 일

신청인(또는 대리인)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외교부장관 귀하

처리절차						
작 성	➔	접 수	➔	처 리	➔	발 급